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공단법안

검 토 보 고

< 퇴직연금공단 신설 등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8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제정 취지	3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총괄의견	8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8
나. 총괄의견	11
3.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안 제1조)	15
나. 공단의 설립 등(안 제2조부터 제6조)	16
다. 공단의 사업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27조 및 제28조)	18

라. 임직원등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9조)	24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안 제20조)	28
바. 공단의 회계 및 재정(안 제21조부터 제26조)	29
사.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33
아. 자료요청권(안 제30조)	34
자. 비밀엄수의무(안 제31조)	36
차. 출자 등(안 제32조)	37
카. 민법의 준용(안 제33조)	38
타. 벌칙(안 제34조 및 제35조)	39
파. 부칙	43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퇴직연금공단법안은 2025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른 현재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퇴직급여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의 관리·감독 업무 지원,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업무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7조).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감독을 규정함(안 제20조).

바.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제정 취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구성됨.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제도로써 도입되었으며(1961년, 30인 이상), 이후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¹⁾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사외(社外)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1)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 확대 연혁

관련법령 공포일	사업규모	적용기간
1962. 3. 4. (영)	30인 이상	1962. 3. 4. ~ 1975. 4. 27.
1975. 4. 28. (영)	16인 이상	1975. 4. 28. ~ 1987. 12. 30.
1987. 12. 31. (영)	10인 이상	1987. 12. 31. ~ 1989. 3. 28.
1989. 3. 29. (근로기준법)	5인 이상	1989. 3. 29. ~ 2010. 11. 30.
2005. 1. 27. (퇴직급여법)	5인 이상	2005. 12. 1. ~ 2010. 11. 30.
2011. 7. 25. (퇴직급여법)	1인 이상	2010. 12. 1.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되고,²⁾

이와 별개로 ④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2)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DB, DC를 갈음하여 사용자가 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 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 자 등 소득이 있는자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규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추가가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①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IRP)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³⁾)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계약형**과 ②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독립된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기금을 운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DB, DC, IRP는 계약형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중퇴기금제도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임.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구 분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개 관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 일괄위탁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기금운용 외부위탁
운용감독	금융기관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3)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 대비 49.3조원(12.9%) 증가한 431.7조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추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적립금(조원)	221.2	255.5	295.6	335.9	382.4	431.7
증감률(%)	16.4	15.5	15.7	13.6	13.8	12.9

이때 제정안은 이와 같이 현행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및 업무량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우선시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운용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을 통해 퇴직연금의 체계적·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총괄의견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정안은 총 35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퇴직연금공단의 설립과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 제정안은 공단을 법인으로 하고(안 제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을 규정함(안 제3조). 공단의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하고(안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5조) 및 공단의 정관(안 제6조), 퇴직연금제도 등 공단의 업무(안 제7조), 퇴직연금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퇴직연금연구원의 설치 근거(안 제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안 제9조)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은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노후준비서비스 등 사업의 근거도 규정하고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다음으로, 공단의 임직원 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임원 등의 규정(안 제10조), 기금이사와 관련한 사항(안 제11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안 제12조 및 제13조), 대리인 선임(안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15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안 제16조), 겸직제한(안 제17조)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를 규정하고 있음.

공단의 회계 및 재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공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안 제20조), 공단의 회계, 공단의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정안은 기타 업무위탁의 근거(안 제29조),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30조),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31조), 출자 등(안 제32조), 특수법인으로써 「민법」의 준용 규정(안 제33조)와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안 제34조 및 제35조)을 규정하고 있음.

[표]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구분	세부내용
제명	「퇴직연금공단법안」
설립 및 사업	제1조(목적)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정관)
	제7조(공단의 업무)
	제8조(퇴직연금연구원)
	제9조(기금운용 인력 양성)

구분	세부내용
제명	「퇴직연금공단법안」
임직원 등	제10조(임원 등)
	제11조(기금이사)
	제12조(임원의 임기)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대리인 선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1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8조(이사회)
	제19조(직원의 임면)
회계 및 재정	제20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1조(공단의 회계)
	제22조(공단의 수입·지출)
	제23조(자금의 차입 등)
	제24조(잉여금 처리)
	제25조(예산의 편성 등)
	제26조(결산서의 제출)
사업	제27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28조(노후준비서비스)
기타	제29조(업무위탁)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2조(출자 등)
	제33조(「민법」의 준용)
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이와 같이 제정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을 전제로, 공단의 조직법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회계 및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실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나. 총괄의견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⁴⁾는 DB, DC, IRP 등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조임.

이에 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첫째, 제정안 일부 조항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급여제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 외 퇴직금이 포함되는바,⁵⁾ 퇴직연금공단의 업무 범위가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과 같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할 경우 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 따를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 및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안 제27조제2항은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의 출자를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 수급권의 훼손이 우려되고, 안 제7조제7호 및 제28조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이와 같이 신설되는 공단의 사업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조직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각 제정안의 임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근거법률 체계와 대부분 일치하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해 제도의 전문성·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보다 체계적·안정적 운영으로 근로자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공단은 퇴직연금 관리·감독 지원,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설치하여 정책 연구 및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⁶⁾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역할, 업무, 차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삭제(퇴직연금공단의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퇴직연금 분야에서 퇴직금의 안정적 보장, 노후소득 보장 강화, 근로자의 자산 형성지원 등 공공부분의 역할과 현재 퇴직연금시장에서 민간금융기관이 자산을 수탁·운영중이라는 국내 연금시장의 구조 및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제도와의 차별성 등에

6) 다만 제정안 각 조항에 대하여는 일부 보완 의견을 제시함.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퇴직연금 정책 영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근로복지공단 내의 퇴직연금계획부·운영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기관 신설 시 추가 재정소요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금융권(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은 제정안에 대하여 퇴직연금공단이라는 전담법인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퇴직연금 특성상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구분되어 발전해 온 역사를 감안할 때 퇴직연금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 등 공공 영역에서 그 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⁷⁾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을 전제로, 공단의 조직법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회계 및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제정안의 내용과 목적이 상호 부합한다고 볼 것임.

7) (자구) 퇴직연금제도인지 퇴직급여제도인지 논의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공단의 설립 등(안 제2조부터 제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을 법인으로 함을 규정하고(안 제2조),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안 제3조),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또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안 제5조),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정안
제2조(법인)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4. 임직원 5. 이사회 운영 6. 사업과 그 집행

- 7. 예산 및 결산
- 8. 자산 및 회계
- 9. 정관의 변경
-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 11. 공고의 방법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검토의견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는 법률에서 해당 공사나 공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이에 안 제2조는 공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공시하는 설립등기를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사무소와 관련된 사항, 안 제5조는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이사회 운영,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회계 등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공단의 사업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27조 및 제28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의 업무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관리·감독 지원 등을 규정하고(안 제4조), 공단의 업무 중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안 제27조),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8조).

제정안
제7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8)(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관리·감독 지원 2. 퇴직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3.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지원 5.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운용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7.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9.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8조(퇴직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7조제2호 및 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퇴직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7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공단의 업무와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⁹⁾ 공단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7조제2항은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퇴기금의 특성 및 퇴직연금의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사회보장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 출자를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참고로 안 제27조와 제28조는 각각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과 유사함.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중퇴기금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점, ②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¹⁰⁾¹¹⁾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중퇴기금의 목적·수익률 제고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에 출자를 하는 것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임.

둘째, 안 제7조제7호 및 제28조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노후준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바 공단의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현재 「국민연금법」 제46조의3¹²⁾ 및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

10)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11) 2013므2250 판례는 퇴직급여법 제정 이후의 판례로, 퇴직급여법 제정 이전 판례 역시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판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기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고나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회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977판결)” 등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주해Ⅱ」, 노동법실무연구회, 2020, 705쪽 참고

12)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호13)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여 전문인력이 전국민에게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진단·상담, 재무 심층 상담 서비스,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이때 제정안과 같이 고용노동부 및 퇴직연금공단을 통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① 안 제7조제1호와 관련,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사업 및 중퇴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관인바 퇴직연금사업자(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지원으로 한정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고, ② 안 제27조제2항의 중퇴기금 법인 출자 관련, 기금 확대나 수익률 제고와 무관한 타 사업의 출자·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③ 안 제28조의 퇴직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13)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안 제28조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와 중복되는 바 동일 사업을 2곳에서 수행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연금법」 및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관리체계 혼선 등 전달체계 혼란으로 국민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 외에 금융권(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퇴직연금공단의 사업범위와 관련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음.¹⁴⁾

14) 금융권은 안 제7조제4호와 관련, 퇴직연금공단이 직접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안 제7조제6호 관련, 중퇴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퇴직연금공단의 중퇴기금 적립금 직접 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바 중퇴기금 영역 확장 및 직접운용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시함.

라. 임직원등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9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에 관련한 사항, 중퇴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임원의 임기를 이사장 3년·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함. 또한 제정안은 임원의 직무, 대리인 선임,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임·해임 사유, 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면에 대해 규정함.

제정안
제10조(임원 등)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급여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의 추천,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이사) ① 상임이사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 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 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 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 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 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1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각 조문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과 관련된 현행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공공기관 지정 이전까지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안 제20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 경영지침 등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제20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하면 이는 필요한 조문으로 보임.

바. 공단의 회계 및 재정(안 제21조부터 제2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의 회계, 수입·지출, 자금의 차입, 잉여금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1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3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4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지출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④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4조(잉여금 처리) 공단의 결산상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공단의 재정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회계의 기준과 공단의 회계를 일치시키려는 취지 및 공단의 수입, 자금 차입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2조제2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연금공단 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까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문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u>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u>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u>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u>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u>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u>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u>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u>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u>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안 제24조와 관련하여, 타 공공기관의 경우 매 사업연도(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시하는 방안의 보완이 필요함.

[잉여금의 처리 관련 타 기관 입법례]

기관명	법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사.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29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
제29조(업무 위탁)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원활한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위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아. 자료요청권(안 제30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세청,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공단의 주요 사업인 퇴직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수수료·사용료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제5항 및 제6항¹⁵⁾은 중퇴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국가의 지원)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기금 환수금 징수를 위한 자료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¹⁶⁾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권 등을 규정하는 등 다수의 자료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에게 이러한 자료요청권을 신설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16) 제39조(업무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비밀엄수의무(안 제31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토의견

직무상 비밀은 임직원 개인이나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성이 높고 비밀 누설 행위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비밀누설로 인한 공단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제정안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차. 출자 등(안 제32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퇴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32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조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동 조항은 공단의 업무 범위에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바와 같이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추진여부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카. 민법의 준용(안 제3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제정안
제33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검토의견

공단이 재단법인인바 이는 필요한 조문으로 보이나, 만약 퇴직연금 공단이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면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타. 벌칙(안 제34조 및 제35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안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제정안은 안 제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정안
제34조(벌칙)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퇴직연금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요청 거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¹⁷⁾은 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¹⁸⁾은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둘째, 직무상 비밀누설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22. 6. 10.>

27조제4항¹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²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²¹⁾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셋째,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1호²²⁾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²³⁾,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²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④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때 제정안은 안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 제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노동관계법률의 규정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파. 부칙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권리·의무의 승계,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은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이 법에 따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일체

2.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17호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연구센터 일체

제4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공단법」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으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 중 “상임이사”를 “기금이사”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퇴직연금공단법」에 의한 퇴직연금공단

2) 검토의견

개정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조의 설립준비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행위 규정 자체가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별도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²⁵⁾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제2호의 퇴직연금연구센터 외 ‘퇴직연금 사업’까지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칙 제6조제2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²⁶⁾에 「퇴직연금공단법」에 의한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액 중 일부를 퇴직연금공단이 받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²⁷⁾

25) 준비행위 시기를 별도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도 아닌바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²⁸⁾하는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에 복권 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신설되는 ‘퇴직연금공단’을 이에 추가하여 법정배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칙 제6조제2항에 대해 이는 법정배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복지진흥기금 배분액 중 퇴직연금사업운영 관련 비중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매년 변화하고 있으므로 배분비중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근로복지진흥기금 배분액 중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40

27) 참고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임.

28) 근로복지진흥기금에 5.31% 배분